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20
----------	-----

2017. 10. 24.(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병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16일

(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박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물을 정함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정일하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(축사 제외)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과 같은 조 제4호아목에서도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은 허가가 가능함

- 동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와 부합하도록 소득기반시설 중 농림업용 취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도서관을 허가 대상 건축물로 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- 입법예고('17. 9. 21.~'17. 9. 2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주민공동이용 시설 중 '마을공동주차장'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,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'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'가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,
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제1호라목에 따라 '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'에 해당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'주민공동이용시설'을 건축함에 있어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, '마을공동주차장'을 명시할 경우 규모, 유형,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,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미반영하였으며, 기타 특이사항은 없음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」

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수원보호구역”이란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허가 대상 건축물 등) ① 「상수원관리규칙」(이하 “관리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농림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.

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서관을 말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수도법]

제7조 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 ① <생 략>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<생 략>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·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건축물,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(再築)·전·용도변경 또는 제거

2. 입목(立木)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

3. 토지의 굴착·성토(盛土)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,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수도법 시행령]

제13조(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

1.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가.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나.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다.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라.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·재축

마.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·공익시설·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

바.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·철도변의 소음권(騒音圈)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.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.

사.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·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

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마을로의 이전

아.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.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.

2. ~ 5. <생 략>

② ~ ③ <생 략>

[상수원관리규칙]

제12조(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)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1. ~ 2. <생 략>

3. 소득기반시설 :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

가. ~ 차. <생 략>

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(축사는 제외한다)로서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와 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.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4. 주민공동이용시설: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
가. ~ 사. <생 략>

아.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.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5. ~ 8. <생 략>